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13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서연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55,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서 2013. 11.경부터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급여 월 1,500,000원(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월 1,374,250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C과의 친분과 전무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① 생략)에서 ① 피고의 급여 및 카드값 등으로 2013. 12. 5.부터 2015. 12. 31.까지 합계 68,637,334원을, 2016. 1. 6.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26,133,334원을 각 출금하였고, ② ‘전무님’ 명의로 2015. 3. 24.부터 2015. 7. 16.까지 합계 28,845,850원을 출금하였으며, ③ 피고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액 명목으로 2015. 4. 24.부터 2015. 7. 27.까지 합계 3,610,000원을 출금하였고, 피고의 처인 E 명의로 2014. 1. 29. 2,800,000원을 출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② 생략)에서 2014. 2. 26.부터 2014. 10. 1.까지 합계 1,900,000원을 출금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3,803,000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2013.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3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급여로 지급받아야 할 돈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합계 49,473,000원(= 1,374,250원 × 36개월)이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20,800,000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부품 등을 개인카드로 구입하면서 부담한 돈은 합계 20,801,506원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91,074,506원(= 49,473,000원 + 20,800,000원 + 20,801,506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합계 135,729,518원(= 68,637,334원 + 26,133,334원 + 28,845,850원 + 3,610,000원 + 2,800,000원 + 1,900,000원 + 3,803,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44,655,012원(= 135,729,518원 - 91,074,50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4,655,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급여로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 회사의 승용정비 파트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① 생략)에서, 피고에게 ‘B’, ‘B 전무님’, ‘B 급여’, ‘B 대여금’, ‘B 카드값’ 등의 명목으로 2013. 12. 5.부터 2015. 12. 31.까지 합계 68,637,334원, 2016. 1. 6.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26,133,334원이 각 출금되었고, ‘전무님’ 등 명목으로 2015. 3. 24.부터 2015. 7. 16.까지 합계 28,845,850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피고의 채권자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5. 4. 24.부터 2015. 7. 27.까지 합계 3,61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의 처인 E에게 2014. 1. 29. 2,8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② 생략)에서 2014. 2. 26.부터 2014. 10. 1.까지 피고에게 합계 1,9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의 계좌는 모두 경리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자금집행은 모두 담당 경리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고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의 채권자 D 및 피고의 처 E에게로 금원이 송금된 것도 모두 C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회사에 필요한 부품 등을 구입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처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추후 원고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돈은 원고 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급여 등으로 지급받아야 할 합계 91,074,50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